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59호

2019. 12. 31.(화)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381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7382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7383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7384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738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738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7387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7388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7389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7390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73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제7392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제7393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7394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7395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739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7397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739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7399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740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7401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7402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제7403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7404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7405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740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7407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740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7409호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8
제7410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40
제741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44
제7412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741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7414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51
제7415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7416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7417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7418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741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7420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7421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7422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61
제742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68
제7424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42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426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규 칙]

제4312호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2
--	-----

◆ 고 시

제2019-458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103

◆ 공 고

제2019-3244호 자동액상살포장치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17

◆ 구 고 시

제2019-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량구) 118

제2019-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량구) 119

제2019-1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량구) 121

제2019-1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량구) 122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1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9. 7. 25.字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국장을 마을공동체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제15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을 “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등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2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여성관련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3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7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4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노사관계안정 등 서울시의 경제사회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경제, 노동시장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전문적으로 협의하고 해

결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나. 노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의체로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제도 신설 및 위원임기, 해촉,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등)

나. 노동시장의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둠(제7조)

다. 협의회 회의와 운영지원 및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발굴 및 관리, 협의회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조항 신설(제13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을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사람”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 ① 협의회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실무위원회는”으로, “협의회”를 “실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 등”으로 한다.

- ① 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등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2제5항 중 “협의회”를 “실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회, 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을 “협의회등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은 협회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운영 및 총괄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사무국장은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협회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하는 공사·공단,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협회등”을 “협회등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중 “협회의 운영”을 “협회 및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바,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독립

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설함

- (1)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5호)

- (2)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5호)

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

-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7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장 박 원 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통문화교육원 이용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2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8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89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326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0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 나.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의·자문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 다. 상위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상 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하고, 서울기록원 정의 부분 본문 “시민기록물”로 잘못 오기한 것을 “민간기록물”로 수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민간기록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및 제5호)
- 나. 투자·출연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관할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제8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 ※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되도록 상위법령의 적용범위를 반영함
- 다. 시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고 민간기록물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함(제4조)
- 라. 타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마. 서울기록원의 개원·휴원일 및 운영시간을 규정함(제9조)
- 바.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해야 되는 대상기록물을 안 제4조에 따른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기록물로 함(제10조).
- 사.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자문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함(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아.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함(제3조 등)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따라 서울특별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시민기록물”을 “민간기록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타기관과의 연계·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개원·휴원 및 운영시간) ①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며, 기록물과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물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쇠약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을 각각 “시, 관할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를 “받거나 수집하여”로 하고, 제1호 중 “시 및 소속 기관”을 “시”로 하며, 제2호 중 “투자·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하고, 제

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3. 제4조에 따라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서울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16조 및 제17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 “(이하 ”영” 이라한다)”를 “(이하 “영”이라 한다)”로, “시 및 소속기관을”을 “시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시 및 소속기관이”를 “시에서”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4조) 중 “법 및”을 “법, 영,”으로,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서울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고 제7조 앞에 “제2장 서울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기록물의 관리”를 삭제하고, 제12조 앞에 “제3장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을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기록물의 관리”를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2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9. 7. 25.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찾동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실·본부·국장을 마을공동체 분야 관련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제6조)
- 나. 그 밖에 오기사항을 정비함(제6조)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행정, 마을공동체, 여성, 복지, 건강) 분야의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3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5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4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제2조제1항)

나.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총징수액에서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징수금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기본공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폐지하되, 징수포상금 증가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율을 하향 조정하여 현 지급수준을 유지하고자 함(제4조)

다.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통해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대하여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제5조제4항)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개정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제6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2조제4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조제1항제6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포탈공제”를 “포탈·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제9항(중전의 제8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일 이후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5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6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7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221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399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20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를 기관 감사한 지적사항과 결과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현황 및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1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3,864,590원”에서 “3,899,370원”으로 변경함
([별표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3,899,370원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2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와 재정부담의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의 발행 및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나. 서울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 다.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 마. 업무대행사의 기능과 역할 구체화 및 대행근거를 마련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 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치구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혹은 권역별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경비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8조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이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3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영상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서울시의 영상산업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

는 서울영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영상위원회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령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1조)
- 나. 영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영상위원회의 사업, 조직, 임원의 구성 등을 규정함(제8조의2)
- 다. 영상위원회의 사업,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서울시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3)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의2와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3. 서울개최 영화제 활성화
4. 서울지역 촬영 제작지원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영상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영상위원회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보조를 받는 영상위원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수, 자격,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시의회의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의 소집,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기구의 조직·운영·보수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4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함(제4조 및 제5조제1항)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9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5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장년층과 노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에 있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 규정은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제9조제2항 삭제)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110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직원의 저출산 문제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제7조제14호 신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7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재능기부활동으로써, 현행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나. 자격요건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로 완화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개정함(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확대·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제19조제6항).

나.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제19조제7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09호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생활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 공원 등에 설치되는 야외운동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나. 이에 따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외운동기구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기준을 규정함(제5~6조)
- 라.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9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0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거주지원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사. 자립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아.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비정신질환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4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당사자 주도로 제공하고자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에서 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의료·복지 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동료지원 쉼터”란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정신질환자 동료가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지원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제5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시책의 이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립생활지원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립생활지원

제6조(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신규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
2.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3.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4.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
5. 정신질환자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연구사업
7.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취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8. 취업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등 관계 기관 협력
9. 정신질환자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10.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사회 거주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원주택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차임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제8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등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권익옹호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연계
4. 동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동료지원가 양성
5.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육성 및 지원
6.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시 안정을 되찾기 위한 동료지원 쉼터 운영
8.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사회지원
9. 그 밖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또는 권익옹호 활동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이어야 한다.
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자이어야 한다.
3. 의결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의결기구의 과반 이상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11조(자립생활교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자, 거주자,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 지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환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민간, 공공기여 등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협상에 필요한 조직으로 민간측협상단, 공공측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의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내지 제7조)
- 다.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제8조 내지 제9조)
- 라.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내용과 협상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제10조 내지 제15조)
-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및 협상결과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내지 제18조)
- 바.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과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이행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내지 제21조)
- 사.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22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희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라 한다)”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복

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 또는 시설 이전·재배치를 통한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위해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고 한다) 제16조 제4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
3. “민간”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 등을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협상조직

제4조(민간측 협상단)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당사자로서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하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공공측 협상단) ①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공공측 협상단은 사전협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부이사관 이상)을 협상대표자로 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6조(협상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간 이해를 교환 및 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 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측 협상단
2. 공공측 협상단
3. 외부 전문가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운영시기 및 방법은 공공측 협상단과 민간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상조직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협

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 협상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협상절차

제8조(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유희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상대상지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조건을 부과하여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제안서 제출) ① 민간은 제9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및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등에 한함)
4. 건축계획서
5. 각종 영향성 검토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관리계획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협상의제 선정) ① 시장은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 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상의제는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협상의제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1.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2. 개발계획(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3. 공공기여(공공기여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의 적정성
4. 기타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기본구상안 공모) ①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협상대상지 선정 후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협상) ① 협상은 제11조의 협상의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협상대상지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기여시설은 민간과 협의하여 정하며, 협상대상지 밖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의 공공기여계획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감정평가 시행) ① 감정평가는 개발계획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한다.

②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공기여시설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외에 감정평가 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상결과 통보)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상을 완료한 경우, 협상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민간은 협상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도서(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포함)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장은 민간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한 때(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협상결과의 재검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중단,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이하 “재검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의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협상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기타 협상결과 등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② 제1항 재검토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방법 및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기준

제19조(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사업의 실현 등을 위해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제공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용도지역의 변경(영 제30조 각 호의 세분 또는 변경 및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6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량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기여의 총량은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 후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한다.

④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① 민간은 사업의 준공(또는 획지별 사업의 준공 중 빠른 시기를 말함)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결과 사업의 준공 전·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 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운영지침)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칭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2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하여, 설계과정의 하나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현재 운영중인 설계심의회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설계품질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추가(제2조제2항제3호)
-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검토기능을 추가하고 검토대상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제3조제3항)
- 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3조제3항제1호의 사항 :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3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범위 및 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를 외부위탁 시행하고자 할 때 서울기술연구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서울기술연구원의 기능 제고는 물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함(제1조).

나. 기존 조사·연구 수행으로 한정된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구체화 함(제4조).

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의 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함(제4조의2)

라. 원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분야”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을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로, 제2호 중 “유지관리(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을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로, 제3호 중 “물 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을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로 하고, 제4호는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5.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7.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8.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조사·기술개발·연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기술개발·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4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최근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규모는 건축물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큼.

특히 서울에는 전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가운데 49.7%가 위치하고 있어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초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과 그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등의 뜻을 정함.(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정함.(제3조)
- 다.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4조)
- 라.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마.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함.(제8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 1. 초고층 건축물
-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계획)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계획의 목표
-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 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법·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5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95%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포함하여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추가함(제3조제2항제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6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조례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로 변경함(제8조제3항제1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본문 중 “24개월분으로”를 “12개월분 이내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새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의 임대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7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16387호, 2019. 10. 24. 시행)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선 등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나. 현 조례 규정에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추가함.(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 신설)
- 나. 종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주거전용면적 165㎡ 이하 범위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호)
- 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 함.(제50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36조제2호 중 “초과한 경우에는”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을 “건축규제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 중 “영 제41조제1항”를 “법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면적의 비율이”를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8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자치구에서 이를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순환 회복을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근거 명확화(제1조)

나.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정의(제2조)

다. 가뭄재해대비, 지하수 함양 및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토록 함(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구청장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34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등”으로 하고, “규정하

여”를 “규정하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 중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의”를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등의”으로 한다.

제15조 중 “빗물침투를 통한”을 “빗물침투 및 유출지하수를 통한”로 한다.

제16조 중 “물관리시설 설치 등의”를 “빗물처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등의”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 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제2항 중 “빗물관리시설의”를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빗물관리시설을”을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4호 중 “빗물관리시설을”을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1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최근 한강사업본부는 ‘건강한 한강’이라는 추진과제 아래 한강공원 내 야생동물 혹은 야생식물 등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여러 장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 이를 현행 조례에 포함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할인)하는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에 야생생물의 보호와 지원 근거를 제16조에 포함함(제16조 제1항 제2호)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생태”를 “생태, 야생생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2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20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시민청(市民廳) 대관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4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21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대내외 협상력 강화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부총장제를 도입하고, 총장 직속기구로 미래혁신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에 부총장제를 도입함(제3조의4)

- (1)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둠.
- (2)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함.
- (3)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나. 서울시립대에 총장직속의 미래혁신원을 설립함(제7조의2)

다. 부총장 직위 신설에 따라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부칙 제2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중 “인권센터”를 “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총장·학장·처장”을 “총장·부총장·학장·처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22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및 권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에 납세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시의회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권한과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한, 처리기간 등을 일부 수정하였는바, 이를 수용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등(제2장)

- (1)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업무 담당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제4조)
- (2)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제5조)
- (3) 납세자보호관은 시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제6조)
- (4)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또는 중지 요구,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시세와 관련된 자치구의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음(제7조)

나.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절차(제3장)

- (1) 고충민원은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항, 2개 이상 자치구에 접수된 유사 고충민원, 시세와 관련된 자치구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함(제8조)
- (2)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감사원장 등의 지시에 따른 처분, 고소·고발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제9조)
- (3)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 종료일 30일 전까지로 함(제10조)
- (4)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되, 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11조)
- (5)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12조)

다. 권리보호요청의 대상과 처리절차(제4장)

- (1) 권리보호요청은 법령을 위반한 세무조사 또는 시세 부과·징수·채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함(제16조)

- (2)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함(제17조)
- (3) 권리보호요청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되,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음(제18조)
-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의 처리 절차 등(제5장)
- (1) 세무부서의 장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
-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함(제21조)
- (3)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20조 및 제22조)
- (4)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음(제20조 및 제22조)
- 마. 시장은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3조)
- 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24조)
- 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음(제25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시세 관련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세무부서”란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시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6.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3장 고충민원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시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한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세액이 영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3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신청한 고충민원이 당초 신청한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

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권리보호요청

제16조(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 진행 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 가.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나.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 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및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시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징수의 체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시장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3일(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1조(세무조사 연기 신청)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세무조사 개시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6장 납세자 권리현장 등

제23조(납세자 권리현장)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자 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징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납세자 권리현장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령 등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우리 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하여 시민 중심 언어의 자치법규 반영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 및 그 밖에 이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분류란 중 “기타”를 “그 밖의 시설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시설비”를 “그 밖의 시설비”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 중 “그 내용 기타”를 “그 내용,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2 중 “공작물 기타의”를 “공작물, 그 밖에 물품이나 공작물의”로 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폐기방법 란의 “기타”를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폐기사유 란의 “기타”를 “그 밖의 사유”로 하고, 폐기방법 란의 “기타”를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부의안전”을 “회의에 부치는 안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카목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장비”를 “그 밖의 장비”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기타”를 “그 밖의 비용”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 각 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2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2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기타 이용률”을 “그 밖의 이용률”로 한다.

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을 각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로, “벽이 기타인 것”을 각각 “벽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하며, “지붕이 기타인 것”을 “지붕이 그 밖의 것인 것”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옥내·외 기타공간”을 “그 밖에 옥내·외의 공간”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당해지구”를 “해당 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등 그 밖에”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이용 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0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을 “위원회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

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제3항제4호 및 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9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110조(「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1조(「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2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의2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부의”를 “의뢰”로 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3조(「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4조(「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15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6조(「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7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8조(「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9조(「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0조(「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1조(「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2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23조(「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4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5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부익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7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여비 기타”를 “여비,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8조(「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9조(「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를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를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0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를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제8호 단서, 같은 항 제9호가목, 나목 및 마목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단서, 제2호 본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별표 1의 공공·공용 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당해시설물”을 “해당시설물”로 한다.

제131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당”을 “당해”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당”을 “당해”로 한다.

제132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3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4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5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당해직”을 “해당 직위”로 한다.

제136조(「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7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8조(「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9조(「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0조(「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1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2조(「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43조(「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4조(「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5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회복 기타”를 “회복,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6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부의할”을 “제출할”로 한다.

제147조(「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8조(「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9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그 밖의 부의안건”을 각각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부의하여야”를 “부쳐야”로 한다.

제37조제9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1항제9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150조(「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심의안건”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1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부의 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

제152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4항제3호 중 “조사 기타”를 “조사, 그 밖에”로 한다.

제153조(「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4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5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6조(「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7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8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9조(「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0조(「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61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2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163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4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5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6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7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68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9조(「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0조(「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1조(「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2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3조(「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4조(「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라목 중 “밖에 기타”를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5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6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7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8조(「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9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0조(「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1조(「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2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기타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3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 기타”를 “허위, 그 밖의”로 한다.

제184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5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공사”를 “그 밖의 공사”로 한다.

제186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7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8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9조(「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0조(「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1조(「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2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협의회에 부의할”을 “협의회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193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4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5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6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의 시설

별표 2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표 기준및이용료란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그 밖의 대관

별표 2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입 장 권 발매행사의 기준및이용료란 중 “기타공연”을 “그 밖의 공연”으로 한다.

제197조(「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8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오수 기타 하수”를 “오수, 그 밖의 하수”로 한다.

제19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0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1조(「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2조(「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3조(「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의안전”을 “회의에 부치는 안전”으로 한다.

제204조(「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5조(「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6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전”을 “회의에 부치는 안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24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람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8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2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426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호 받으며, 재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자치구에 대한 지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조, 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 나. 정신질환자관련 정책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제3조제5항 신설)
- 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신설)
-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신설)
- 마.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 시 지역에서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쉼터의 설치를 규정함(제13조 신설)
- 바. 장기입원 등의 문제를 배제하고, 폐쇄병동을 축소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치료환경을 위해 치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신설)
- 사. 정신질환자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신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신질환자”란”을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을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 제1항의”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을 “회복과 사회통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

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를 “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지역보건법」 제7조를 연계하여 시”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를 “이하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복지서비스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삽입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정신건강 상”을 “정신건강상”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를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정신질환자등”을 각각 “정신질환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중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사업”을 삽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 센터, 안정화 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치료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보호”를 “옹호”로,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를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운영비·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 중 “바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312호****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별표 2)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감면·면제 기준 란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58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2006.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0.16.)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

구 분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	17	금천구	시흥동	220-2	1.0 (9,960㎡)	190%	7	60%	1	재건축사업	전면철거
변 경					1.0 (10,558㎡)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신 규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10,558.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정비기반 시설 등	총 계	10,558.0	100.0	-
	소 계	1,845.0	17.5	-
	도 로	1,505.0	14.3	-
	하수도	340.0	3.2	도로(824.0㎡) 중복결정 면적제외
획 지	소 계	8,713.0	82.5	-
	획지1	8,713.0	82.5	공동주택 부지

4.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558.0	-	10,558.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0	-	258.0	2.4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300.0	-	10,300.0	97.6	-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808	시흥동 산118	시흥동 230-5	일반	-	1999.5.8	-
신설	소로	2	(A)	6~8	국지도로	175	시흥동 230-114	시흥동 220-2	일반	-	-	하수도중복 결정(824.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	소로	시흥동 230-114	도로신설 B= 6~8m, L=175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 신설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구역내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도시자연공원	시흥동 230-114번지 일대	258.0	감)258.0	-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도시자연공원	시흥동 230-114번지 일대	감)258.0㎡	사업구역 진출입 및 주변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신설을 위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

나) 구역외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도시자연공원	시흥동 산100-1번지 일대	1,955,422.0 (258.0)	감)258.0	1,955,164.0 (-)	1968.1.15	-

※ ()는 구역내 면적

다.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하수도	시흥동 703-78	시흥동 230-7	-	0.15	1,164.0	-	도로중복결정 (824.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하수도	시흥동 703-78	시흥동 230-7	-	1,164.0	하수도 신설	공동주택부지 중앙에 위치한 하천부지의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의 합리적 배치계획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면하여 하수도를 신설,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함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법정기준)
신설	관리사무소	획지1	100.0	$10\text{㎡} + (\text{세대수} - 50) \times 0.05 = 19.25\text{㎡}$ $10\text{㎡} + (235\text{세대} - 50) \times 0.05 = 19.25\text{㎡}$
신설	경비실	획지1	50.00	-
신설	경로당	획지1	145.0	$50\text{㎡} + \text{세대당 } 0.1\text{㎡를 더한 면적}$ $50\text{㎡} + (235\text{세대} \times 0.1) = 73.50\text{㎡}$
신설	어린이놀이터	획지1	450.0	$200\text{㎡} + \text{세대당 } 1\text{㎡를 더한 면적}$ $200\text{㎡} + (235\text{세대} \times 1) = 435.00\text{㎡}$
신설	주민복지시설	획지1	180.0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시흥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0,558.0	획지1	8,713.0	시흥동 220-2번지 일대	4	-	-	4	-	-

8. 건축시설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규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0,558.0	획지1	8,713.0	시흥동 220-2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60% 이하	228% 이하	미적용	43m이하 (최고13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35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세대수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100%	
	합계					235세대 (100.0%)					
	전용60㎡이하					175세대 (74.5%)					
	전용60㎡~85㎡이하					60세대 (25.5%)					
	전용85㎡초과					-					
※ 임대주택건설 : 0세대											
심의완화 사항	■ 총수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평균11층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1항 다목에 따라 총수완화 대상지역 면적의 10% 이상(10.62%) 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6% 적용(지능형 건축물 4등급)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 대상지 남측 신선평로변(폭2m)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대상지 서,북측 구역 경계부(폭1~15m)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공지는 비오톱 유형1등급지로 보전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획지1		- 대상지 남측 신선평로변(폭2m) 지정 - 대상지 서,북측 구역 경계(폭1m~15m) 지정								도면참고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등)	산설정비기반시설	산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0,558.0㎡	8,713.0㎡	1,845.0㎡	333.0㎡	390.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845.0㎡ - 333.0㎡ - 390.0㎡ = 1,122.0㎡$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190% + 6% = 196% • 인센티브 = 6% [지능형 건축물 4등급(6%)]				
상한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9.1.16.)」 적용 $\begin{aligned} &\text{개발가능용적률} \\ &= \text{허용용적률} \times (1+1.3a) \\ &= 196\% \times (1 + 1.3 \times 0.1287) \\ &= 228.79\% \text{이하} \end{aligned}$				
법정상한용적률	$\begin{aligned} &\bullet 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 &\quad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 1,122.0 / 8,713.0 \\ &= 0.1287 \end{aligned}$				
	• 미적용				

①기준용적률	항목	인센티브	적용 여부	③허용용적률 (①+②)
190%	우수디자인	15%	-	196%
	장수명주택	10%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 1, 녹색 최우수	-	
		• 에너지 1, 녹색 우수	-	
		• 에너지 2, 녹색 최우수	-	
		• 에너지 2, 녹색 우수	-	
	신재생에너지	• 20% 초과	-	
		• 20% 이하 ~ 15% 초과	-	
		• 15% 이하 ~ 10% 초과	-	
	지능형건축물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역사문화보존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정 등(위원회 인정)	5%	-
②인센티브 적용 계		6%		최대 20% 이내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이하 여백-

9. 도시경관,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도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방지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이하 여백-

나. 환경성 검토결과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30%	• 생태면적율 32.19%로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적용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면적 I, 녹지모양 III, 내부연결성 III, 외부연결성 III	•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정녹지 배치하여 환경성검토 녹지평가지표 1을 달성
3. 지형변동	절선통비율 20%미만	• 본 대상지는 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표고가 높아지는 지형임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최소화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흠막이공법 실시
4. 비오류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대부분 비오류유형평가 4등급으로 조사됨	• 대지면적내 조정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대상지 북서측에 금천초가 입지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삼성산이 위치하고 있음	•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 청정연료 사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8. 경관	Skyline보전	• 본 대상지 주변에 관악산 및 삼성산이 위치한 녹지공간과 근린공원등이 형성되어 경관조망 우수한 지역임	• 인접지역 경관에 위압감 해소를 위해 기준 높이를 적용하여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합리적인 조정계획수립 및 자연지반 녹지, 인공지반 녹지를 통해 녹지 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창출을 도모함
9. 휴식 및 여유허간	휴식·여가공간 확대확보	• 대상지는 주변에는 삼성산자연공원이 있음	• 자연·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
10.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북쪽으로 삼성산터널 및 삼성산2터널이 있는 탐골로5길(12M)이 접하고 있음	• 대상지 북측12m도로와 기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원활한 진출입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11.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 이상 발생 예상 •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12.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건설폐자 및 폐유등 발생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 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가칭)시흥현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또는 신탁업자	140	235	95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남측 탐동초교 및 북서측 금천초교가 입지	•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탐동초등학교로 사업지 남측 경계에 접하고 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립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 또는 신탁사 선정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추진위승인 이전 상태로 주민들 거주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이 부시지 않는 등을 설치	-

13.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1) 주택건설 : 235세대
- 2) 수용인구 : 635인(1세대 당 2.7인 기준)
- 3) 주택공급계획

구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고
합 계		235	140	95	-	-
60㎡ 이하	소계	235	140	95	-	-
	30㎡이하	-	-	-	-	-
	30㎡초과~50㎡이하	69	-	69	-	-
	50㎡초과~60㎡이하	106	80	26	-	-
60㎡초과 ~ 85㎡이하		60	60	-	-	-
85㎡ 초과	소계	-	-	-	-	-
	85㎡초과~135㎡이하	-	-	-	-	-
	135㎡초과	-	-	-	-	-

※ 현황 세대(140세대)가 추후100% 분양신청 한다는 가정하에 임의산정 하였으며, 추후 관리처분인가시 변경 될 수 있음.

15. 구역내 옛길, 옛물길 등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하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경사면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수해에 대비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구분	계획내용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경사가 있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재	•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철저 대비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구역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변경사유 등 기재)
신규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10,558.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변경사유 등 기재)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0,558.0	-	10,558.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0	-	258.0	2.4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300.0	-	10,300.0	97.6	-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808		시흥동 산118	시흥동 230-5	일반	-	1999.5.8	-
신설	소로	2	(A)	6~8	국지도로	175		시흥동 230-114	시흥동 220-2	일반	-	-	하수도중복 결정(824㎡)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구역내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도시자연공원	시흥동 230-114번지 일대	258.0	감)258.0	-	-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도시자연공원	시흥동 230-114번지 일대	감)258.0㎡	사업구역 진출입 및 주변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신설을 위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

나) 구역외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도시자연공원	시흥동 산100-1번지 일대	1,955,422.0 (258.0)	감)258.0	1,955,164.0 (-)	1968.1.15	-

※ ()는 구역내 면적

3)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하수도	시흥동 703-78	시흥동 230-7	-	0.15	1,164.0	-	도로중복결정(824.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	하수도	시흥동 703-78	시흥동 230-7	-	1,164.0	하수도 신설	공동주택부지 중앙에 위치한 하천부지의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의 합리적 배치계획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면하여 하수도를 신설,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획 지	소 계	8,713.0	100.0	공동주택
	획지1	8,713.0	100.0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규	허용용도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신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신규	190% 이하	196% 이하	228% 이하	미적용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196% 상한용적률 228% 법정상한용적률 미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지능형건축물 4등급	
신규	6%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신규	1,122.0㎡(10.62%)	-	-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신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평균 11층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1항 다목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 평균 7층 이하. 다만, 사업계획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 채납 하는 경우 평균 13층 이하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 대상지 남측 신설도로변	■ 도로 경계로부터 2m
	■ 대상지 서, 북측 구역 경계	■ 구역 경계로부터 1m ~ 15m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 대상지 남측 신설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 대상지 서, 북측 구역 경계	■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되는 비오톱 유형 1등급지는 보전 - 폭원 : 1m ~ 15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차량동선계획	■ 대상지 남측	■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저해 방지를 위해 완화차로 및 도시계획도로 신설
보행동선계획	■ 폭 6~8m 신설도로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3개소)
주차계획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 기준이상 주차면수 확보

-이하 여백-

3) 환경관리계획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30%	• 생태면적율 32.19%로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적용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면적 Ⅰ,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Ⅲ, 외부연결성 Ⅲ	•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하여 환경성검토 녹지평가지표 1을 달성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본 대상지는 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표고가 높아지는 지형임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최소화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4. 비오름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대부분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으로 조사됨	• 대지면적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대상지 북서측에 금천초가 입지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삼성산이 위치하고 있음	•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 청정연료 사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8. 경관	Skyline보전	• 본 대상지 주변에 관악산 및 삼성산이 위치한 녹지공간과 근린공원등이 형성되어 경관조망 우수한 지역임	• 인접지역 경관에 위압감 해소를 위해 기준 높이를 적용하여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합리적인 조정계획수립 및 자연지반 녹지, 인공지반 녹지를 통해 녹지 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창출을 도모함
9. 휴식 및 여유허용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는 주변에는 삼성산자연공원이 있음	• 자연·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
10.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북측으로 삼성산터널 및 삼성산2터널이 있는 탐골로5길(12M)이 접하고 있음	• 대상지 북측12m도로와 기철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원활한 진출입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11.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 이상 발생 예상 •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12.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폐유 등 발생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4)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 2019년 서울시 제16차('19.10.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내용	초치계획	비고
서울특별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1. 용적률(기준 190%, 허용 196%, 상한 228%), 공공기여(도로, 수도 1,120㎡, 순부담 10.62%), 높이계획(최고13층, 평균11층이하), 세대수(전체235세대), 대지조성계획(+45m, +48m, +51m), 도로계획(경사도 등) 등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심의(2019.10.16.)상정안으로 계획안 수정하였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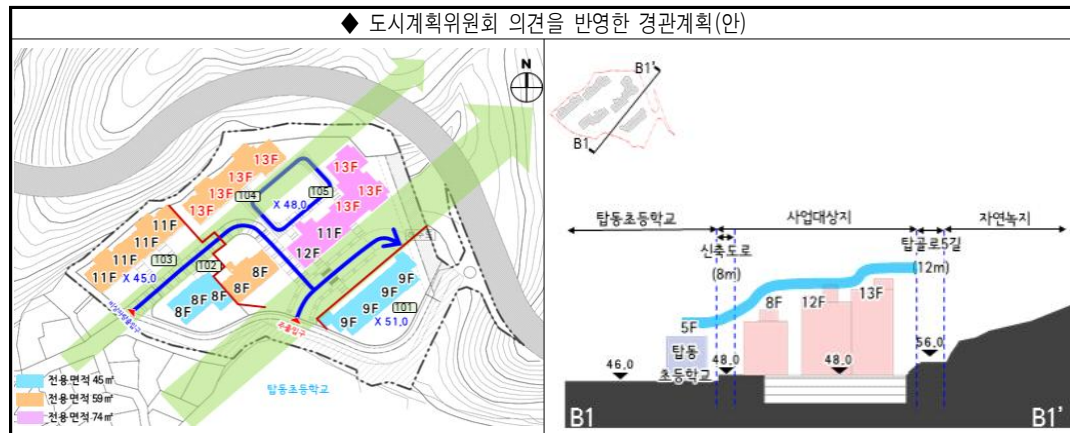
구분	심의결과	내용	조치계획	비고
		2. 대상지는 '주요산(관악산) 주변 중점경관 관리구역' 인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대상지 일대 경관상의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배치 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관련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경관계획

구분	내용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 대상지는 '주요산(관악산) 주변 중점경관 관리구역' 인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대상지 일대 경관상의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배치 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관련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방향성	-	■ 삼성산의 조망을 가리지 않는 조망축 확보 ■ 대지레벨에 순응하는 방향을 갖도록 건축계획
건물 진출입구	-	■ 신설도로 2-(A)로변으로 건물 진출입구를 1개소 이상 확보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예정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정비구역 결정도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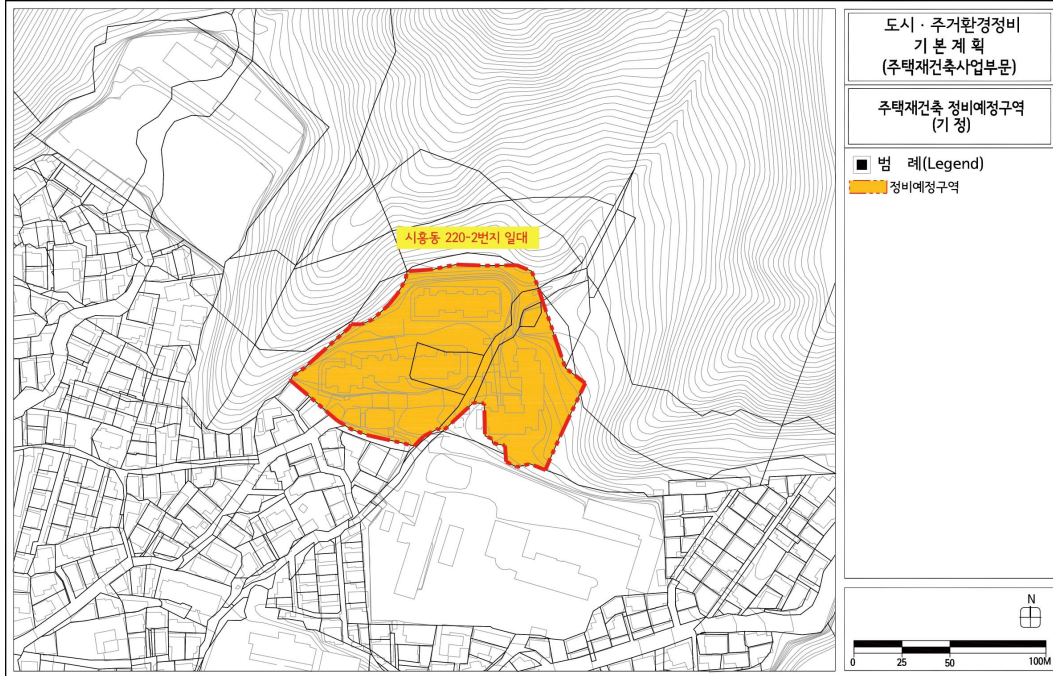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2), 금천구 주택과(☎02-2627-161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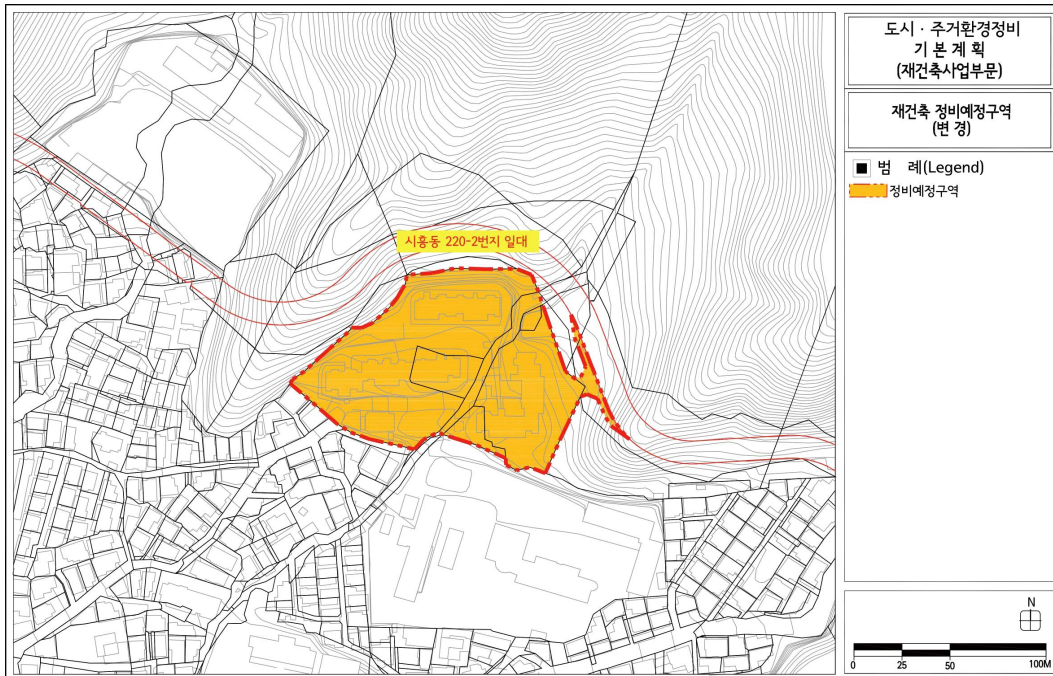
VI. 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정비예정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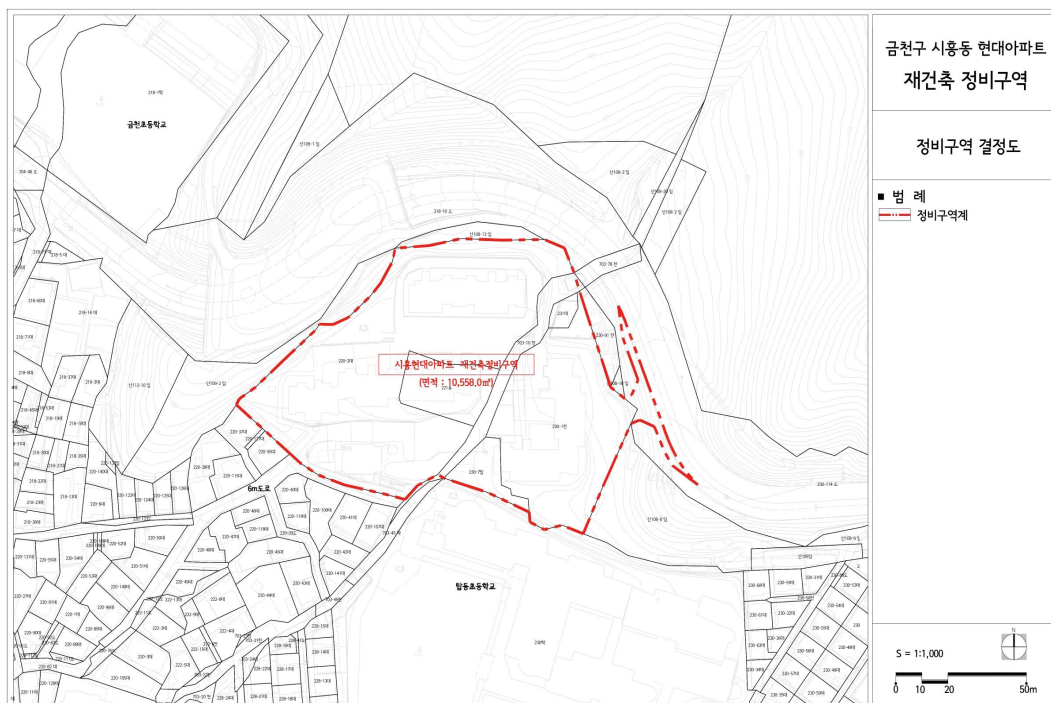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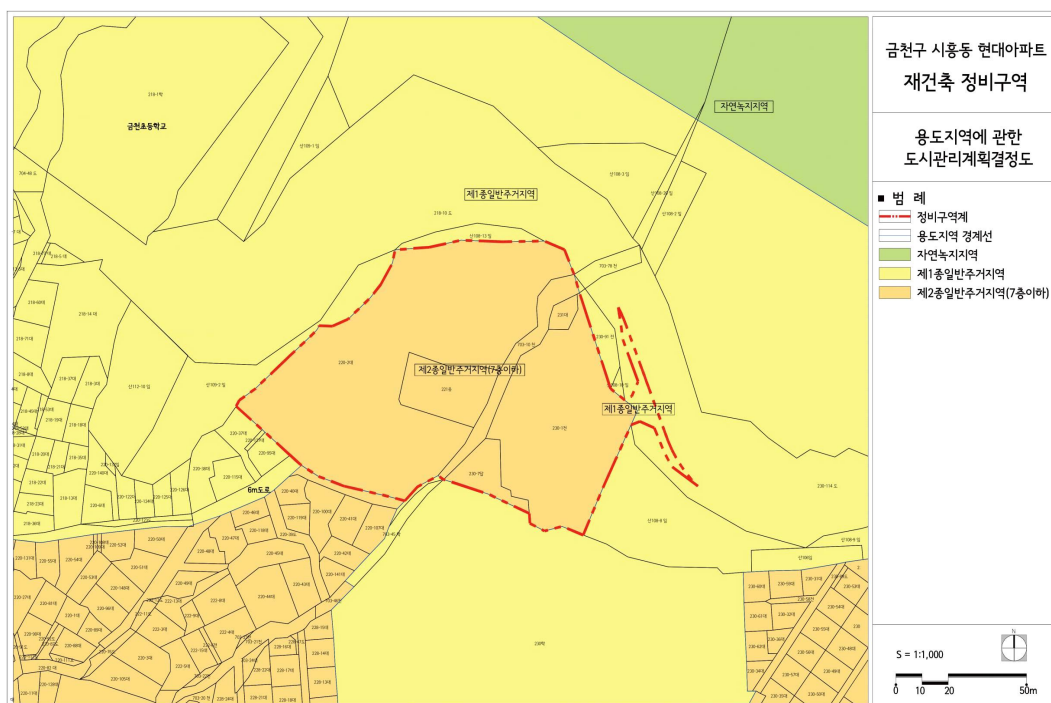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 결정도(변경)



2. 정비구역 결정도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244호

자동액상살포장치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제설 취약구간 강설초기 도로결빙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액상살포장치와 관련하여 적설량 상황관측 및 차량소통 현황 모니터링, 염수살포 상황 관측 등을 위한 재난예방 목적으로 구리암사대교 북단램프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CCTV설치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동부도로사업소 자동액상살포장치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설치위치: 구리암사대교 북단 아천IC주변
- 설치목적: 적설량 상황관측 및 차량소통현황 모니터링, 염수살포 상황관측 등
- 설치수량: 1대
- CCTV 설치 예정지점: 붙임자료 참조

2. 행정예고(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도로보수과에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 제출내용: 의견 제출서 작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이메일: wartry@seoul.go.kr 의견 제출서 송부
- 문의처: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이석연 (☎ 02-2040-0344)
- 참고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촬영되어 전송된 영상정보는 녹화·기록 및 수집·저장 되지 않음.]

- 붙임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CCTV 설치 예정지점 1부. 끝.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19-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1974.0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중랑구고시 제1995-51호(1995.12.12.) 및 제2019-94호(2019.10.10.)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9-1173호(2019.11.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중화동 132-1번지 도로사업」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32-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중화동 132-1번지 도로사업

다. 사업의규모 : 면적 301㎡(1필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0.06.30.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로과(☎ 2094-2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132-1번지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32-1	대	317	301	엠파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	-	-	
						이 하 여 백					

◆ 중랑구고시 제2019-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67호(1978.09.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36호(2019.5.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중랑구 공고 제2019-1314호(2019.12.12.)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면목동 1269 ~ 1274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 업 규 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 업 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269~1274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면목동 1269 ~ 1274간 도로사업	B=6m L=85m	인가일로부터 2019.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67호 (1978.09.12.)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시중랑구봉화로179 (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20.12.31.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다.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라.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전화 : 2094 - 2692~7)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면목동 1269 ~ 1274간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면목동	1277-3	대	109.0	109.0	김청자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60-210				
2	면목동	1274-1	대	11.0	11.0	현덕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신월리 311				
3	면목동	1273-2	대	48.0	48.0	조현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1동 1402호				
4	면목동	1272-1	대	252.0	1.0	문동수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84가길 15, 101호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면목동 지점)	근저당권	
						이진우	서울시 성동구 용답중앙13가길 13-1(용답동)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길동지점)	근저당권	
						김갑선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19-17, 2층(방배동)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석계역지점)	근저당권	
						김남능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08-7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여신관리부)	가압류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케이엠타워 13층	가압류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케이엠타워 13층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중앙지사)	압류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60,502,503호	가압류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92(천천동지점)	근저당권	
						김길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72-1, 301호				
						한희정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72-1, 301호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면목동 지점)	근저당권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상봉동 지점)	근저당권	
						최점선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7가길 14-15(암사동)	한화생명 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유재성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72-1, 비 301호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소매여신운영부)	근저당권	
								상봉산농협동조합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92길 31(상봉동)	근저당권	
5	면목동	1270-1	대	260.0	260.0	최덕룡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72				
6	면목동	1281-3	대	8.0	8.0	김현수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16-47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예산지점)	근저당권	
7	면목동	1282-2	대	320.0	15.0	김우겸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88길 5-14(상봉동)	상봉산농협동조합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02-3	근저당권	
						백은숙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88길 5-14(상봉동)				

◆ 중랑구고시 제2019-1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7호(1974.0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37호(2019.05.09.)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중랑구 공고 제2019-1315호(2019.12.12.)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신내동 536-13 ~ 536-9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랑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 규모	사업의 착수에정일 및 준공예정일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업 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 신내동 536-13~ 536-9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신내동536-13~536-9 도로 개설	폭 8m 연장 70m	인가일로부터 2019.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74.04.20.)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로179 (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20.12.31.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다.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라.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전화 : 2094 -2692~7)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신내동 536-13 ~ 536-9간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신내동	536-9	전	411.0	411.0	진금숙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새길 89			
						진동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93번길 7(명서동)			

◆ 중랑구고시 제2019-1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7호(1974.0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70호(2019.08.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중랑구 공고 제2019-1313호(2019.12.12.)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중화동159-2~158-8간」, 「중화동157-1~154-57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 업 규 모	사업의 착수에정일 및 준공예정일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업 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9-2~158-8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중화동159-2~158-8간 도로사업	면적 1,176m ²	인가일로부터 2019.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74.04.20.)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로 179(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20.12.31.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7-1~154-57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중화동157-1~154-57간 도로사업	면적 1,176m ²	인가일로부터 2019.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74.04.20.)	- 성명 : 중랑구청장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로 179(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20.12.31.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다.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라.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전화 : 2094 - 2692~7)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159-2~158-8간 도로사업, 중화동 157-1~154-57간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59-2	대	43.0	43.0	여형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09번길 20-36(평내동)				
2	중화동	157-16	대	96.0	96.0	최광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145-1	성북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압류	
3	중화동	158-5	전	519.0	519.0	곽준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56, 3동 405호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박규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0-24, 102호(응암동)				
						여인환	미합중국 뉴저지주 부리스 오드리코트 5				
4	중화동	158-8	전	241.0	241.0	여정훈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 510동 104호(인창동, 신일아파트)				
						박규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0-24, 102호(응암동)				
						여인환	미합중국 뉴저지주 부리스 오드리코트 5				
5	중화동	154-30	대	66.0	65.0	여동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3동 1001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6	중화동	154-85	임야	212.0	212.0	현연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10	중랑구청	봉화산로 179	압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